

전주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253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한창훈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783,277원 및 그 중 17,451,005원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22. 9.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0.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7,783,2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7,783,2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피고 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 2. 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수익자인 피고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B은 악의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7,783,2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선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C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020. 2. 3.경 생활정보지인 'D'에 공개된 매물이었다.

2) 피고 B은 2020. 2. 3. 위 C공인중개사를 통해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일부인 500만 원을 C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2020. 3. 31.인데,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그보다 4일 앞선 2020. 3. 27. E은행 익산지점에서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20. 1. 29. F부동산의 중개로 자신 소유의 익산시 G 대지 133.98㎡를 H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잔금 지급시기, 즉 B이 H로부터 위 대지 매도대금을 받은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20. 3. 31.과 같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별지